

채낚기 어선의 항법 상 지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tatus of Jigging Vessel in the Steering and Sailing Rules

정대을* · 서문 옥**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BAHRI-MSML 1등항해사

핵심용어 : 채낚기 어선, 표박, 정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선원의 상무, 선박사이의 책무

Key Words : Jigging Vessel, Drifting, Waiting, Vessel Engaged in Fishing,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an, Responsibilities between Vessels

1. 사건개요

1.1 어선 제209주영호-산적화물선 인스퍼레이션 레이크 충돌 사건(동해해심 재결 제2017-018호)

제209주영호(총톤수 74톤, 길이 30.51m)는 오징어채낚기 어선으로서 물뚫을 놓아 표박상태에서 야간에 집어등을 밝게 켜 채 조업을 한 후 주간에 표박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이었다. 산적화물선 인스퍼레이션 레이크(총톤수 23,269톤, 길이 173.52m)는 중국 상해 대창항을 출항하여 러시아 보스토치니항을 향하여 침로 018도, 약 12노트로 항행 중이었다.

인스퍼레이션 레이크는 선수방위 약 303도를 향한 채 표박 중인 제209주영호와 충돌하였다.

1.2 어선 제509주영호-어선 영비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재결 제2018-002호)

제509주영호(총톤수 29톤, 길이 21.5m)는 오징어채낚기 어선으로서 물뚫을 놓아 표박상태에서 집어등을 밝게 켜 채 조업 중이었다. 영비호(총톤수 23톤, 길이 19.6m)는 오징어채낚기 어선으로서 조업장소를 향해 침로 약 088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행 중이었다.

영비호 선장은 출항 전 복용한 약의 영향으로 부지불식간에 졸음운항을 하여 영비호가 제509주영호와 충돌하게 하였다.

2. 원인고찰

2.1 항법 상 지위

항법 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그물, 낚시줄, 트롤망 또는 그 밖에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선은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하고, 조업 중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존재할 경우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 때문에 규정된 항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물뚫을 놓고 표박 중인 선박은 항법 상 “항행 중(underway)”

인 선박에 해당한다.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뚫을 놓아야 하고, 물뚫은 어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아올리는데 최소한 10여분에서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물뚫을 놓고 표박 중일 경우 물뚫으로 인해 조종성능을 제한받는다 할 수 있으나, 항법 상 “조종제한선”에 해당할 정도로 조종성능을 제한받는다 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물뚫을 놓고 조업 중일 경우

물뚫을 놓은 상태에서 조업 중인 채낚기 어선은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및 「해사안전법」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을 정의한 취지를 고려할 때 항법 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지위를 갖는다고 봄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물뚫을 놓고 대기 중인 경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어선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업을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낚기 어선은 물뚫을 놓은 상태에서 대기 중인 경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낚기 어선은 조업 중일 경우와 동일하게 물뚫으로 인해 조종성능의 제한을 받고 있다.

2.2 항법의 적용

2건의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을 적용한다.

1) 어선 제209주영호 :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고 표박상태로서 조종성능이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상대선박”보다 열악한 상태로 판단하여 “선원의 상무(船員의 常務,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적용하였다.

2) 어선 제509주영호 :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인정되어 “선박사이의 책무” 규정을 적용하였다.

3. 개선사항

오징어채낚기 어선은 물뚫을 놓고 있을 때에는 조업 중이나 대기 중이나 물뚫으로 인해 항법 상 조종성능이 제한되는 것이 거의 동일하므로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 dychong@korea.kr, 010-2822-5790

** wsuhmoon@hanmail.net, 010-2466-8968